

제293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권영희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영 희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-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권영희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9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
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사회투자기금 용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
저금리 용자지원(연 0.5 ~1.5%)시행으로 인해, 사회투자
기금 용자 수행기관의 기존 수취이자(연 3% 이내)에 대한
차액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